

부산광역시사하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사유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잡종재산 매각대금 납부 및 공유재산의 대부 이자율을 인하하는 등의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의거(2002.11.29) 행정자치부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표준안을 시달함으로써 이에 따른 조례를 개정코자 함.

## 2. 주요골자

가. 잡종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10년 이내 기간은 연5퍼센트에서 연4퍼센트로, 5년 이내 기간은 연8퍼센트에서 연6퍼센트로 인하함.

(안 제22조제1항, 동조제2항)

나. 공유재산 대부료 등에 대한 특례대상에서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목적에 대하여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안 제23조의2)

다.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연15퍼센트에서 연체기간별로 연12~15퍼센트로 차등적용 및 연체료 부과기간을 60월로 상한설정.

(안 제28조제1항)

라. 매각대금 분할납부, 대부료등에 대한 특례, 연체요금등에 대한 특례 적용례에 대한 적용시기를 부칙에 명시

### 3.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제83조, 동법시행령제84조, 제91조

### 4. 검토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행정자치부에서 잡종재산과 공유재산 매각 또는 대부와 관련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하기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한후 (2002.11.29) 이와 관련되는 각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기위해 개정안 준칙을 시달함에 따라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 주요 키포인트는 제22조, 제28조의 이자율을 5%→4%로, 8%→6%로 인하고 연체이자율 15%→기간별 연12~15%로 차등적용하므로서 사실상 인하하는것과 부과기간을 60개월로 연장하는 것이며,
- 기타 사항은 자구수정 및 시행령개정에 따른 조항변경사항을 현실과 맞게 수정하는것이며 부칙을 새로 신설하려는 것이므로
- 원안대로 가결해도 문제가 없을것으로 사료됨.

2003. 6.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윤 병 성